

1. 개정이유

연근해어업이 연간 어획량의 최고한도 준수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어구 등에 대한 제한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도입하여 어구·어법 중심(Input control)의 어업관리체계에서 총허용어획량 중심(Output control)의 어업관리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업의 종류별 허가의 정수 등에 대한 특례 도입(제3조제7항부터 제9항 및 별표3의2 신설) 및 어구의 규모 등에 대한 특례 추가(별표10)

1) 총허용어획량(TAC) 및 모니터링 체계를 자발적으로 수용하는 어업인단체에 어업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총허용어획량(TAC) 기반 어업 규제완화 시범사업” 추진 중

2)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수산동물의 종별 연간 어획량의 최고한도를 준수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조업실적 보고체계에 따라 조업실적을 보고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해서는 현행 어구의 규모 등에 대한 제한을 일정기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총허용어획량 중심 어업관리체계의 근거를 마련함

3) 고갈 되어가는 수산자원관리를 위하여 규제하던 어선의 장비와 규모, 어구의 규모 등을 어업인단체 스스로 총허용어획량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일부를 완화하게 됨에 따라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어구어법을 사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03. . ~ 05.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완화 등, 이견 없음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 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 어업의 종류별 허가의 정수 등의 제한을 일정기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1.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수산동물의 종별 연간 어획량의 최고한도를 준수할 것
2. 「어선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이를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3.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조업실적 보고체계에 따라 조업실적을 보고할 것
4. 그 밖에 어선안전 및 조업감시를 위한 시스템의 구비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⑧ 제7항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제한의 내용 및 그 적용기간은 [별표 3의2]와 같다.

⑨ 제7항에 따라 제한이 달리 적용되는 대상자 선정의 절차 및 방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

제21조 중 “법 제30조제1항부터”를 “법 제30조제1항 및”으로, “휴업기간
의 연장 및 휴업기간”을 “휴업기간”으로,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별지 제
17호서식”을 “별지 제17호서식”으로, “휴업신고 및 휴업기간의 연장신고
시”를 “휴업신고 시”로 한다.

별표 3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0 제1호나목4) 중 “9월 1일부터 11월 30일”을 “8월 21일부터 11월
18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6호 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의2]

달리 적용되는 종류별 어선 기관의 마력·부속선의 수 및 규모 등(제3조제8항
관련)

1. 적용 요건

가. 소형선망어업

1) 부속선의 수 및 규모

별표 1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7항의 요건을 갖춘 소형선망어업의 부속선의 수 및 규모는 부속선의 종류와 관계없이 2척 이내, 20톤 미만으로 한다.

2) 구역

1)의 부속선의 수 및 규모는 주)해역 밖에서만 조업해야 한다.

2. 적용 기간

제1호의 요건을 적용하기로 한 날부터 1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장 할 수 있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적용기간 및 연장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주) 다음의 좌표와 선을 차례로 연결한 해역을 말함(부도 참조)

가. 북위35도12분50초 동경126도10분00초

나. 북위35도04분08초 동경125도58분36초

다. 북위34도52분24초 동경125도54분18초

라. 북위34도41분07초 동경125도51분08초

마. 북위34도33분51초 동경125도57분32초

바. 북위34도18분45초 동경126도05분16초

사. 북위34도11분16초 동경126도22분30초

아. 북위34도05분16초 동경126도28분08초

자. 북위34도02분48초 동경126도36분05초

차. 북위34도06분02초 동경126도54분30초

카. 북위34도09분42초 동경127도15분21초

타. 북위34도21분30초 동경127도48분19초

파. 북위34도24분34초 동경127도51분55초

하. 북위35도12분50초 동경126도10분00초

거. 북위35도04분08초 동경125도58분36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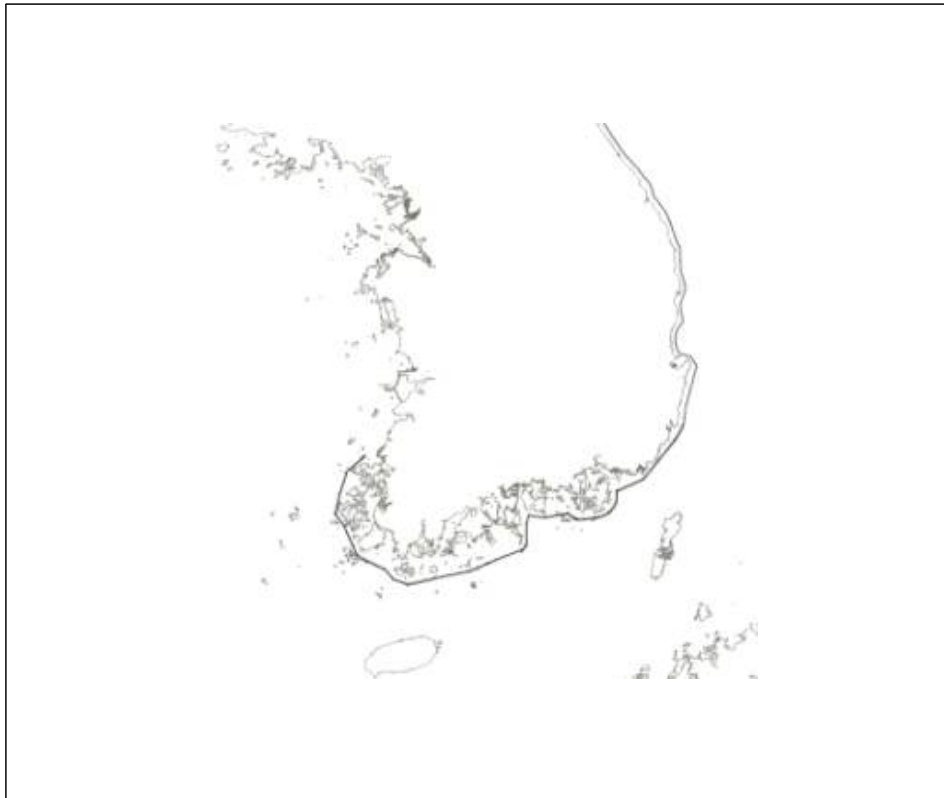
너. 북위34도52분24초 동경125도54분18초

더. 북위34도41분07초 동경125도51분08초

러. 북위34도33분51초 동경125도57분32초

머. 북위34도18분45초 동경126도05분16초
버. 북위34도11분16초 동경126도22분30초
서. 북위34도05분16초 동경126도28분08초
어. 북위34도02분48초 동경126도36분05초
저. 북위34도06분02초 동경126도54분30초
처. 북위34도09분42초 동경127도15분21초
커. 북위34도21분30초 동경127도48분19초
터. 북위34도24분34초 동경127도51분55초

[부도]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0] <신설 2020. 4. 14.>

달리 적용되는 어구의 규모 등에 대한 제한의 내용 및 적용기간(제41조의3 관련)

1. 제한의 내용

가. 근해안강망어업

1) 어구

영 별표 1의2 II 제12호가목3)에도 불구하고 세망(細網)으로 된 자루그물 내부에 어류를 분류하는 그물을 여러 개 부착할 경우 망구에 가장 가까운 어류분류망에만 어류 탈출구를 설치하고, 나머지 어류분류망에는 어획물 분류 작업을 위한 개폐구를 설치할 수 있다.

2) 그물코의 규격

영 별표 3의4에 따른 기준에도 불구하고 끝자루를 제외한 자루그물 중 일부에는 어구 전개(展開)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세망(細網)을 사용할 수 있다.

나. 연안개량안강망어업

1) 어구

영 별표 1의2 III 제1호가목2) 및 같은 목 4)에도 불구하고 자루그물의 입구의 상부와 하부가 수해와 암해로 구성된 어구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1통의 어구(어구용 닻을 포함한다)를 사용하거나 실어야 한다.

2) 어법

1)의 어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III 제1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어업허가를 받은 1척의 어선을 닻으로 고정시킨 후에 어선 선미(船尾)에서 자루그물을 투망하고 수해와 암해를 수중으로 내려 투망을 완료하며,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수해와 암해를 수면 위로 들어 올린 후 자루그물을 거두어들여 양망하는 어법으로 조업한다.

3) 구역

1)의 어구 및 2)의 어법은 주)의 해역에서만 사용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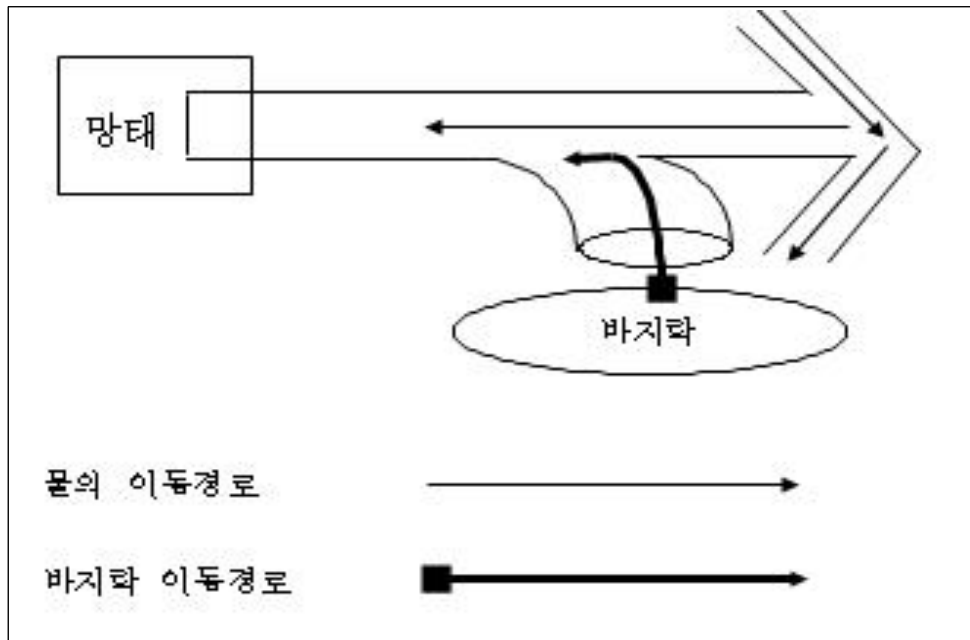
4) 그물코의 규격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업하는 경우 영 별표 3의4에 따른 기준에도 불구하고 8월 21일부터 11월 18일까지는 사용금지 그물코의 규격을 6밀리미터 이하로 한다.

다. 잠수기어업

1) 어구

영 별표 1의2 II 제21호에도 불구하고 바지락만을 채취하기 위한 흡입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흡입기는 5마력 이하여야 한다.



2) 구역

1)의 바지락을 채취하기 위한 흡입기는 여수시 관할구역에서만 사용해야 하며, 흡입기 사용어선은 마을어장과 1,000m 이상 이격해야 한다. 다만, 해당 마을어업권자와 이격거리를 협의한 경우 해당 마을어장과의 이격거리는 조정할 수 있다.

2. 적용기간

제1호의 제한을 적용하기로 한 날부터 1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다

만,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연장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주) 다음의 A해역 및 B해역을 말함

A해역: 다음의 좌표와 선을 차례로 연결한 해역(부도 참조)

가. 북위 37도 42분 13초, 동경 126도 21분 33초

나. 북위 37도 42분 14초, 동경 126도 19분 54초

다. 나로부터 강화 석모도 최남단까지의 바닷가를 따라 연결한 선

라. 강화 서도면 주문도 최남단

마. 북위 37도 33분 00초, 동경 126도 03분 00초

바. 북위 37도 17분 00초, 동경 126도 03분 00초

사. 북위 37도 19분 00초, 동경 126도 18분 30초

아. 영종도 최서단

자. 강화 장곶돈대 최서단

차. 자로부터 가까지의 바닷가를 따라 연결한 선

B해역: 다음의 좌표와 선을 차례로 연결한 해역(부도 참조)

가. 북위 37도 39분 19초, 동경 126도 31분 54초

나. 북위 37도 39분 19초, 동경 126도 31분 22초

다. 나로부터 황산도 최동단까지의 바닷가를 따라 연결한 선

라. 영종도 최동단

마. 북위 37도 29분 45초, 동경 126도 36분 16초

바. 북위 37도 36분 04초, 동경 126도 33분 36초

사. 바로부터 가까지의 바닷가를 따라 연결한 선

[부도]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어업의 종류별 허가의 정수 등) ① ~ ③ (생 략) ④ ~ ⑥ 삭 제 <u><신 설></u>		제3조(어업의 종류별 허가의 정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 은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 게 어업의 종류별 허가의 정수 등의 제한을 일정기간 달리 적 용할 수 있다. 1.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수 산동물의 종별 연간 어획량의 최고한도를 준수할 것 2. 「어선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 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 추고 이를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3.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조 업실적 보고체계에 따라 조업 실적을 보고할 것

<신 설> <신 설> 제21조(휴업 등의 신고서) 법 제49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u>법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u>에 따라 어업의 휴업, <u>휴업기간의 연장 및 휴업기간</u> 중의 어업개시를 신고하려는 자는 각각 <u>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신고서에 어업허가증(휴업신고 및 휴업기간의 연장신고 시에만 제출한다)을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u>4. 그 밖에 어선안전 및 조업감시를 위한 시스템의 구비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u> <u>⑧ 제7항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제한의 내용 및 그 적용기간은 [별표 3의2]와 같다.</u> <u>⑨ 제7항에 따라 제한이 달리 적용되는 대상자 선정의 절차 및 방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u> 제21조(휴업 등의 신고서) ----- ----- <u>법 제30조제1항 및</u> ----- ----- <u>휴업기간</u> ----- ----- ----- <u>별지 제17호서식</u> ----- ----- -----<u>휴업신고</u> ----- ----- -----.
--	--